

# 용역계약 변경 합의서

주식회사 알파피플(이하 “갑”)과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(이하 “을”)는 2025년 5월 12일 체결한 “외주 용역 계약(이하 ‘원계약’)”과 관련하여,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한다.

## 제1조 (계약 기간 및 해지 권한의 변경)

원계약 제2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- 갑의 해지권: 을에게 지급된 누적 용역 대가(제4조에 따름)가 **20억 원 이상** 발생한 시점부터 갑은 1개월 전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에 따라 원계약 제2조 제2항의 '4년 내 해지 불가' 조건은 삭제한다.
- 을의 해지권: 앱 런칭 6개월 후부터, 매월 말일 기준 직전 6개월간 을에게 지급된 누적 용역 대가의 합계가 **1억 원 미만**인 경우, 을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에 따라 원계약 제2조 제3항의 '2년 내 해지 불가' 조건은 삭제한다.

## 제2조 (용역 대가의 산정 방식 및 비용 부담)

원계약 제4조 제1항의 요율 및 비용 부담 주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- 용역 대가 요율: 을이 수령하는 용역 대가는 매출액 대비 다음 각 호의 구간별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한다.
  - 누적 **10억 원**까지: 매출의 **9%**
  - 누적 **10억 초과 ~ 20억 원**까지: 매출의 **8%**
  - 누적 **20억 초과 이후**: 매출의 **7%**
- 본 건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프라 비용: 서버, 데이터베이스, 네트워크 등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기본적인 시스템 유지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.
- 외부 서비스 사용료(특칙): 다국어 실시간 번역을 위한 AI 모델 사용료(API 비용 등), 화상통화 지원을 위한 외부 솔루션 이용료 등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3자 외부 서비스 사용료는 갑이 직접 결제하되, 갑과 을이 **70:30**의 비율로 부담한다. 갑은 당해 월의 외부 서비스 사용료 총액 중 을의 부담분(30%)을 을에게 지급할 용역 대가에서 공제한 후 정산하여 지급한다.
- 누적 기준: 본 합의서 및 원계약에서 말하는 '누적 용역 대가'는 제1항의 요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하며, 제3항에 따라 공제되는 외부 서비스 사용료 부담금은 누적 용역 대가 산정 시 차감하여 계산한다.

## 제3조 (소스코드 소유권 및 사용권)

원계약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-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결과물(소스코드, 기술 문서 등)의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된다. 갑은 본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결과물을 사용하기 위한 비독점적, 재판매 불가, 재허락 불가한 사용권(License)만을 가진다.

2.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갑의 경영권 변동이나 본 계약과 관련된 사업 부문이 제3자에게 매각(M&A)되는 경우에 한하여, 갑은 본 사용권을 해당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 단, 그 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.
3. 을에게 지급된 누적 용역 대가가 총 20억 원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(지분 50:50)하되, 각 당사자는 독립적인 소유권을 가진 것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다. 이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본 결과물을 자유롭게 이용, 수정, 복제할 수 있으며, 제3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매각/양도할 수 있다.

#### 제4조 (개발 범위의 제한 - 신설)

을의 개발 및 유지보수 범위는 을에게 지급된 누적 용역 대가가 2억 원에 도달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정한다.

1. 운영을 위한 백오피스(관리자 페이지) 개발 및 고도화
2. 서비스 다국어 확장 및 글로벌 배포
3. AI 기반 자동 번역

#### 제5조 (기타 조항의 삭제)

원계약 중 다음의 조항은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며 삭제한다.

1.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(상호 독점권 관련 조항 삭제)
2.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(손해배상 특칙 관련 조항 삭제)

#### 제6조 (기타)

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계약의 조항을 따르며, 본 합의서와 원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합의서의 내용이 우선한다.

**2026년 1월 12일**

(갑) 주식회사 알파피플 대표이사 조재현 (인)

(을)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 대표이사 이재철 (인)